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.
국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7월 25일, 이수진의원 등 11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4년 7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국방위원회(2024.8.2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소위원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(2024.9.23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수정
가결)

제3차 국방위원회(2024.9.25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
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이수진의원)

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·특별공로금·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.

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,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.

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제2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오명호)

○ 현행법 제정('04. 1. 29.)이래 동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 보상금 등의 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, 여전히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미신청자 존재

- 미신청자 규모: 6,470여명(특수임무수행자: 약 5,500여명, 유족: 약 970여명)

○ 보상금 등의 신청기한은 2019년 11월 25일에 만료되어 추가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의 연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과 유사한 성격의 타 법률에서도 추가보상의 필요성으로 신청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여 보상을

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

- 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2차례, 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」 3차례 기간 연장

- o 다만, 보상인원이 법률 제정시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(제정시 보상인원: 4,394명, 최근 5차 개정시 보상인원: 268명) 및 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’을 설치해 인력 및 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, 개정안과 같이 장기간 신청기한을 설정하는 안과 이전(3~31개월)과 같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홍보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받도록 하는 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한 신청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위원회(소위원회) 심사내용

(소위원 한기호)

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, 지급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면서 “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면 방문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·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”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제10조제2항 중 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”를 “2026년 3월 31일 까지”로 함. 시행일을 “공포 후 3개월”에서 “2025년 4월 1일”로 함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1.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9.

제안자 : 국방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하면서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이나, 신청기한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임.

부대의견

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면 방문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·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.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5년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생략)	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	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<u>6개월</u> 이내에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5년</u>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1년</u> ----- -----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”를 “2026년 3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생략)	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<u>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</u>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2026년 3월 31일까지</u> -----.